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에 관한 공시

❑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사유 및 주요 개정내용

▪ 개정사유

- 금융당국의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마련에 따른 지배구조법 일부개정으로 이사회가 내부통제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여야 하고,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임원에게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마련하여야 함에 따라 지배구조내부규범을 개정

▪ 주요 개정내용(신·구조문 비교표)

기 존	개 정 후	개 정 사 유
제14조 (위원회)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회 내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, 감사위원회, 보수위원회, 위험관리위원회를 두며,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	**제14조 (위원회)**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회 내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, 감사위원회, 보수위원회, 위험관리위원회, 내부통제위원회, ESG위원회, 경영위원회를 두며,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	▪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및 운영중인 소위원회 반영
(신 설)	**제19조 (내부통제위원회)** ① 내부통제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한다.	▪ 지배구조법 제16조 관련 사항 신설

기 존	개 정 후	개 정 사 유
	② 내부통제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.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.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3.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 4.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 5. 그 밖에 내부통제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 내부통제위원회는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원과 대표이사가 각각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에 따른 내부통제등 관리의무에 따른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·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. ④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의 세부사항은 당해 위원회규정에 따른다.	
제19조(경영위원회)~제21조(임원의 자격요건)	**제20조(경영위원회)~제22조(임원의 자격요건)**	▪ 조문신설에 따른 조문변경
(신 설)	**제23조 (임원의 자격요건 적합여부 보고 등)**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임원이 지배구조법 제5조 및	▪ 지배구조법 제7조 관련 사항 신설

기 존	개 정 후	개 정 사 유
	제6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 1. 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2.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직책을 변경하려는 경우 3.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책무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	
제22조(임원의 권한과 책임)~제34조(책임경영체제확립)	**제24조(임원의 권한과 책임)~제34조(책임경영체제확립)**	조문신설에 따른 조문변경
(신 설)	**부 칙** **이 정관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.**	(신 설)